

손잡고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2020년 제5차 회원총회 자료집

- 일시 : 2020년 3월 25일(수) 오후 7시
- 장소 : 인권재단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2020 정기총회 식순

- 총회의장 : 배춘환 (손잡고 공동대표)
- 사회 : 박래균 (손잡고 운영위원)

-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성원 보고
 3. 의장 인사말
 4. 2019년 손잡고 활동 보고
 5. 안건 상정 및 승인
 - 제1호 의안 : 2019년 회계·업무 감사보고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20년 예산·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임원 선출 및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의안
 6. 공지사향
 7. 폐회선언

- 목차 -

손잡고 5회 총회 식순	---	1
손잡고 활동보고		
1. 조직소개	---	4
2. 2019 활동목표	---	5
3. 조직활동보고	---	6
4. 2019 전체사업	---	8
5. 주요활동보고	---	10
6. 활동평가	---	38
7. 2019년 활동일지	---	45
2019년 손잡고 재정보고	---	56
총회 안건 상정 및 승인		
1. 2019년 회계 및 업무감사 보고와 승인의 건	---	62
2. 2020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64
3. 2020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68
4. 임원 및 감사 승인의 건	---	69
5. 기타 안건	---	70

[첨부자료1.] 손잡고 정관(2019.4.25. 개정)

[첨부자료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안/20대국회 발의)

[첨부자료3.] 괴롭힘소송금지 특례법(민사소송특례법/20대국회 발의)



2019년 손잡고활동보고

1. 조직소개

1) 단체명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손잡고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모임입니다. 2014년 2월 26일 시민사회 각계각층 550명의 제안자와 함께 출범했으며, 같은 해 4월 16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낼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노동자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이유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당사자들과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을 구성해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운영조직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진은 2018년 4월 27일 개최한 제3회 손잡고 회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운영위원 가운데 유금분 운영위원과 감사진은 2019년 4월 25일 개최한 제4회 손잡고 회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잡고의 회원은 CMS시스템 개편(2016. 7. 1) 이후 새로 후원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임대표

•배춘환 : 회원대표, 2014노란봉투캠페인 제안자

- 운영위원(6인)

•박래균: 인권재단사람 부설 인권중심사람 소장

•박병우: 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실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법률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유금분: 서울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상담실장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감사

•업무감사 : 김도형(변호사)

•회계감사 : 박병학(회계사)

- 사무국 : 윤지선
- 회원 : 후원회원(일시후원포함) 260명

3) 활동위원회

손잡고는 활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활동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진상조사소위원회
- 손잡고기금심의위원회
-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 노동현장간담회참여단위 : 손배피해사업장 참여
 -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속 : 동양시멘트지부, 부산합동양조 생탁, 울산과 학대학노조, 부천지역일반노조(원종복지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보쉬전장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쌍용자동차지부, 신영프레스전분회, 유성기업지회(아산, 영동), 파인텍지회, 하이디스지회, 한국GM비정규직 지회(창원, 부평),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지부, AVO카본 코리아지회, KB오토텍지회, KEC지회, DKC지회
 - 보건의료노조 소속 : 고려수(금천수)요양병원지부
 - 언론노조 소속 : MBC본부
 - 공공운수노조 소속 : 경북대학교병원분회, 서라벌지회, 택시지부, 철도 노조, 한국항공비정규직지부, KTX 승무지부
 - 서비스연맹 소속 : 택배노동조합

2. 2019 활동목표

1) 목표

- 손잡고는 파업 및 노동쟁의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 가족해체, 신용불량 및 파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이어지며 극단적 자살위기를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 손잡고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소를 목적으로 손배가압류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강화하는 법제개정 활동을 비롯해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2) 2019년 주요과제

“손잡고의 하루를 잡아주는 손”

- 입법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활동
- 모금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운동
- 지원활동 : 손배가압류 피해자 및 노동현장 지원활동
- 의제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의제화(기고,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 감시활동 : 손배가압류 현황조사 및 사례 기록
- 캠페인활동 :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공연, 전시, 1인시위 등)
- 회원활동 :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회원배가운동
-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국 구성 확대

3. 조직 활동보고

1) 운영위원회 활동

- ① 주요활동 내용 : 2019년 운영위는 조직정비, 사업 기획 및 승인, 활동위원회 구성,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손잡고 자체모금활동 기획 및 승인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 ② 2019년도 정기 운영위원회의 : 8차례 진행

- 2019.01.18. [운영회의] 제29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2.26. [운영회의] 제30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3.21. [운영회의] 제31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4.18. [운영회의] 제32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7.04. [운영회의] 제33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8.22. [운영회의] 제35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9.30. [운영회의] 제36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12.27. [운영회의] 제37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③ 각 운영위원 담당활동 구분 : 손잡고의 운영에 있어 계획된 활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운영구조와 재원확보방안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사무국 구성을 1인 활동가 체제로 둘 수밖에 없는 한계 등을 고려해 각 운영위원은 활동 계획에 따라 분야별 담당을 맡아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운영위원은 사업 시행 과정을 정기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공유합니다.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무국 담당 : 박병우 운영위원
- 모금·캠페인, 국회사업 담당 : 박래군 운영위원
- 노동현장 담당 : 이남신, 유금분, 윤지영 운영위원
- 법제도개선활동 담당 : 송영섭, 윤지영 운영위원
- 회원 담당 : 박래군, 안진걸 운영위원

2) 사무국 구성

- ① 사무공간 : 2017년 4월부터 <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의 공간지원을 받아 1층에 사무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 ② 활동가 : 재정적 사유로 증원없이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9년도 활동가 급여를 인상했습니다(기본급 8만5천원 인상). 필요 시 활동가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과 상의하여 단기로 활동보조인력을 채용합니다. 손잡고 단기인건비 시급은 '최저시급1만원'을 실천합니다.

4. 2019년 전체사업

표-2019 손잡고 활동정리표

항목구분	사업내용		시기	비고	
모금활동	CMS-회원배가활동		수시	회원 255명	
	긴급법률기금모금		19.12~20.2	원종복지관 피해구제	
	공모사업 참여		수시	인권재단사람 '일단쉬고' 선정	
	KB손해보험노동조합 기금체결		2019.11	'공생을 위한 후원 계약'	
법제도개 선활동	국가손배 대응모임 (간사단체 참여)	기자회견, 성명	수시	당사자 간담회 4회 / 기자회견 3회 / 성명 및 보도자료 3회	
		회의	수시	4회	
		책임기관면담	수시	경찰청 2회 / 법무부 2회 / 국회 2회	
	법제도개선활동		수시	탄원서 조직, 인권위 진정, 국회 면담 등	
	손잡고논평		수시	9건	
	노동현장간담회		월1회	38차~42차 회의 진행	
	한일손배노동현장교류		19.5 / 19.8	5월 일본방문, 8월 한국초대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19.4~9	연례사업	
	문화 캠페인	연극<노란봉투> 일본 낭독공연		19.1.25~27	한일문화교류회 초대 / 관객과의 대화 등 참여
		손잡고 인문학 강좌		19.11	4강 진행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3회	3개 현장 방문 기록	
	손배실태조사 :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 236명 손배가압류 피해실태조사 발표		2019.1	손잡고, 고려대김승섭교수팀, 와락과 공동사업	
지원활동	성심수녀원 지원연계 (장학금, 보육비)		수시	고등학생 5명, 영유아 5명	
	긴급법률기금지원		19.12	손배피해노동현장 당사자 법률기금 지원	
	KEC지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9	KEC지회손배종결 축하행사 주관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요청 시	손잡고노동현장 실무연대
	연대사업	공동 기자회견, 성명	요청 시	손배관련 외 노동현장, 시민단체 등 연대
		대책위 참여 등		
		현장방문		
기타연대활동		필요 시	경조사, 후원행사, 재정사업 등	
언론활동	손배가압류 관련 기고		수시	8건
	손배관련 언론기획		수시	7건
회원활동	제4회 회원총회		2019.4.25	연례사업
	뉴스레터 <손각지>		정기	정기 뉴스레터 7회 발행
기타사업	운영회의		정기	29차~37차 진행
	인권재단사람지원사업 '일단쉬고'		19.10.10~31	활동가 쉼 지원

5. 주요활동 보고

■ 모금활동

회원 후원 | 2019년, 손잡고를 후원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년 손잡고와 손을 잡아주신 회원여러분 덕분에 많은 손배가압류 노동현장의 손을 잡고 법제도개선활동, 현장지원활동 등 손잡고의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2018년 265명의 회원에서 7분이 줄어 258명의 회원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더 많은 시민들이 손잡고를 알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원배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도 회원배가에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잡고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기부금등록민간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납부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 손잡고 홈페이지 '후원하기': <http://sonjabgo.org/>

2019년 손잡고와 손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1월~2020년 3월 18일)

강버들	강성덕	강세웅	강인수	강정숙	강태웅	고태은	곽동표	곽승규	구교인
구두희	권경희	권미영	권일	권주용	권태훈	길래현	김강학	김경동	김경래
김경훈	김규성	김금주	김남오	김대용	김동수	김동원	김동필	김득중	김명옥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상구	김상용	김상은	김성민	김성원	김성진	김세진
김소리	김수경	김수희	김숙연	김아리	김언경	김연우	김영민	김영숙	김영재
김옥경	김옥길	김우	김윤미	김윤수	김은아	김은주	김은희	김이종	김정욱
김정운	김종원	김종채	김종환	김지숙	김진이	김창선	김채빈	김혜인	김호규
김호정	노미선	노영숙	노현아	류성훈	문근숙	문기주	문종찬	민현수	박경은
박근용	박다정	박래군	박민	박배균	박병우	박상근	박석운	박선유	박성호
박소연	박소희	박영희	박재필	박정희	박정희	박채은	박철민	박태규	박태현
박혜진	박희송	박희영	박희정	배은정	배지훈	배춘환	백선영	백영화	변영학
변정운	서민식	서중석	서진숙	서찬욱	서한나	석권호	선혜란	성지민	송경숙
송규영	신세민	신정웅	신희영	심우성	심춘복	심희준	안성희	안순호	안영철
안진걸	양은정	엄기정	엄소현	오소영	오춘상	유금분	원동석	유민지	유애리

유연석	유현웅	윤여철	윤인중	윤지선	윤지영	윤충열	은수미	이갑호	이건민
이경숙	이근탁	이기찬	이남국	이남신	이달별	이대희	이덕희	이동철	이미옥
이상민	이서영	이선아	이선주	이설희	이성곤	이성하	이수호	이승근	이승한
이승훈	이애자	이양구	이용석	이우경	이윤주	이은주	이인용	이재형	이정연
이정현	이조은	이종희	이지연	이진아	이찬용	이창근	이충호	이태호	이해영
이현욱	이현진	이효건	임미선	임소라	장동엽	장석우	장인숙	장지선	전경호
전경혜	전의창	정애리	정준호	정현주	정홍조	정환봉	조경애	조기선	조동희
조미선	조민혁	조선희	조승희	조은	조은하	조철호	조혜선	조희재	주윤아
지민선	지상원	진기숙	차진각	차형근	채희국	최명희	최보민	최상하	최수미
최여울	최영호	최용규	최용근	최은배	최은비	최전돈	최정운	최창수	탁선호
편도환	하나	하해성	한상균	한상훈	한재홍	함점순	허경훈	허종석	허지웅
현승건	현상용	홍기빈	홍성일	홍영표	황경순	황규태	황은숙	황정인	(260명)

단체
성심수도회 금속노조쌍용차지부 한백교회 KB손해보험노동조합 쟁의연락회의(일본)

기타의명
올해도열심히

단체 후원 | 노동현장부터 종교계까지, 손잡고와 손잡기

2019년에도 회원여러분과 더불어 ‘노동조합’에서 손잡고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위태롭게 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손잡고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는 노동조합들이 꾸준히 손잡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장기투쟁에서 노동현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지부’가 정기단체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순차적으로 복직되어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의 개인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10년만의 값진 투쟁의 성과와 기쁨을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일본 쟁의연락회의의 한국 방문 및 기금전달

바다 건너 일본의 노동현장에서도 연대기금을 전해주었습니다. ‘쟁의연락회의’는 일본에서 손배배상가압류로 고통받

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연대단체입니다. 2019년 한일손배노동현장 교류로 한국을 방문해 손잡고에도 연대를 보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와 고통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시민으로서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하며, 손잡고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노동조합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손잡고와 '상생연대'를 위한 기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손잡고 외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금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손잡고를 2년 연속 협약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협약식에서 KB손해보험노동조합은 노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손잡고의 활동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2019년도 알차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KB손해보험노동조합 '상생연대기금' 협약식

종교계에서도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손잡고의 활동에 연대해주는 성심수도회 분들이 2019년에도 잊지않고 손잡고에 후원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성심수도회 소피센터는 후원금 외에도 손잡고와 연계해 현장을 지원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뜻밖의 연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한백교회 교인분입니다. 한백교회에서는 수시로 지원이 필요한 곳곳에 교인들의 헌금의 일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주간지 <시사인>에 실린 손잡고의 기사를 보고 활동에 공감해 기금 전달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관심을 연대로 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모사업참여 | 비영리재단과 손잡기

2019년, 손잡고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각 비영리재단에서 공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019년은 ‘인권재단사람’에서 진행하는 ‘활동가 재충전 프로젝트-일단 쉬고’에 선정되어 활동가의 휴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캠페인사업을 위해 ‘노동’을 주제로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지원했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긴급법률기금모금 | 그녀들의 용기, 우리의 응답

“가임기 여성은 다 짤라야 해” 이 한 마디에 저항한 이유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무더기 보복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두 노동자에게 연대하고자 긴급법률기금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복소송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손잡고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인권중심사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보복소송에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12월 26일부터 소셜펀치, SNS 홍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두 노동자의 사연을 알리는 등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통해 긴급하게 필요한 손배 660만원, 구상금 300만원 등 법률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금은 3월 7일까지 진행합니다.



▲ 긴급법률기금모금 웹자보

■ 법제도개선 활동

노동현장간담회 | 손잡고 활동 동력, '손잡고 노동현장'



▲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는 노동현장간담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노조의 재판상황과 투쟁경과, 손배가압류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손잡고 활동 경과 및 계획 등을 공유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각 노동현장의 상황에 맞춰 현장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간담회 외에 현장별 국회면담과 국정감사기간 국회질의, 탄원서 조직 등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에는 총 7차례 노동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는 각 노동현장의 임원을 선출하는 기간이라 평년에 비해 간담회 횟수가 줄었습니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신영프래시전분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택배연대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항공비정규직노동조합 등 9개 노동조합이 새로 간담회 참여 단위가 되었습니다. 각 노동조합과 소속조합원들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위협성 공문을 받는 등 노동권 위축 사례를 알렸습니다.

[노동현장간담회]

2019.03.14 제38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2019.05.22 제39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2019.06.28 제40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2019.07.31 제41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2019.08.29 제42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한일손배노동현장교류]

2019.05.06 참가자 사전모임
 2019.05.15 일본 손배노동현장 연대 방문
 2019.05.15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가처분, 간접강제 등 노동탄압사례발표 한일손배현장 간담회
 2019.05.16 일본 손배노동현장 연대 방문
 2019.08.29 한일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간담회(한국에서 진행)

모의법정 | 일방적 법인분할과 파업권, 예비법조인의 치열한 변론!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제5회 대회를 예비법조인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손잡고와 공동주관을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제5회 대회의 주제는 ‘일방적인 법인분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과 손해배상청구입니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총 12팀이 참가했으며, 8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본 대회와 시상식은 8월 17일에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본 대회 재판부로는 권영국 변호사(심사위원장, 전 민주노총법률원장), 최은배 변호사(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윤덕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박은정 교수(인제대 법학과),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이 참여했습니다.

재판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심사평에서 “문제가 어려워 학생들이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례적으로 5회 대회는 시상식이 50분가량 지연될 정도로 치열한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판례만 따라가는 것은 좋은 변론이 아니”라며 “표현의 자유, 인간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 고통에 대한 공감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은 치열한 접전 끝에 5006번팀(고려대 로스쿨 배태영, 김승원, 설동연)이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에 선정되었습니다. 5006번팀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참가팀 가운데 가장 지나침 없는 논리구성을 해 변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민주노총 김경자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쌍용자동차지부, 한국GM지부,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등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현장에서도 참관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올해로 6년차가 되는 모의법정. 연차가 쌓이는 동안 어느덧 모의법정 참가자들이 변호사가 되고, 실제 노동탄압 현장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변론을 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는 지난 모의법정 참가자들과 함께 손배가압류 법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꾸려볼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함께한 사람들]

- 주최 : 손잡고,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 국회의장(시상), 법무부장관(시상)
-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집행위원회 소개
 - 집행위원장 : 송영섭(손잡고 운영위원/ 금속노조법률원장)
 - 집행위원 : 배춘환, 박래군, 박병우, 안진걸, 윤지영, 이남신, 양현아(서울대 교수)
 - 간사 : 윤지선(손잡고), 강민주(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문제출제위원 :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류하경(변호사/민변), 탁선호(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 재판부 : 권영국(재판장/변호사), 고윤덕(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변호

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은정(교수/인제대), 조현주(변호사/민주노총법
률원), 최은배(변호사/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수상자]

- 국회의장상 5006번팀 고려대학교 로스쿨 배태영, 김승원, 설동연
- 법무부장관상 5009번 충남대학교 로스쿨 최용현, 강빈, 김세종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장상 5004번(서울대 로스쿨 이산하, 연미현, 정영훈) / 5008번(고려대 로스쿨 김시은, 김주광, 남상지)
- 노란봉투법상 5001번 고려대학교 로스쿨 김지원, 민경현, 이해빈 / 5005번 고려대학교 로스쿨 신일식, 박병규, 추효창 / 5007번 고려대학교 로스쿨 은혁준, 임동찬, 전준우 / 5012번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박지아, 전서현, 중앙대학교 로스쿨 김현수

[모의법정]

- | | |
|------------|--|
| 2019.05.07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공고 |
| 2019.05.08 | 집행 및 실무회의 |
| 2019.05.10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
| 2019.05.21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접수 |
| 2019.05.21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출제위원회 출제회의 |
| 2019.06.10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규정 및 문제출제 |
| 2019.07.15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 종합평가 |
| 2019.07.17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예선 결과 발표 |
| 2019.07.31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재판부 구성 확정(집행위원회) |
| 2019.08.12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보도자료 배포 "일방적인 법인분할에
대항하는 파업, 노동자의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 2019.08.17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대회 |
| 2019.08.20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결과 보도자료 배포 "손배소, 변호인은 노동자
들 겪었을 고통을 더 자신감 있게 변론해야" |

[법제도개선활동]

- | | |
|------------|---|
| 2019.06.17 | 국가인권위원회-손잡고 정책간담회 |
| 2019.08.26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면담 |
| 2019.09.17 | KEC구조고도화 관련 손잡고-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실(산자위소속) 면담 |
| 2019.12.27 | <탄원서>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

국가손배대응모임 | 쌍용차 경찰 가압류 10년만에 해제

국가손배대응모임은 노동권이나 집회·시위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제기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2017년 5월 11일, 쌍용자동차 지부가 국가손배 피해당사자 단체 및 개인들에게 ‘함께 대응하자’며 손을 내밀었으며, 손잡고는 모임에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면담



▲ 경찰청 면담

2019년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활동을 종결하는 해입니다. 2018년 경찰청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진상조사결과에 대해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손배 취하 등 권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청은 1월부터 10년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임금을 가압류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2019년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소제기주체이자 소송수행청이기도 한 경찰청과, 소송대리인이자 소송관련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를 상대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소송을 비롯한 국가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 경찰청과 법무부를 각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을 기점으로 가압류 대상자 39명에 대한 해제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어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손배소송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청 진상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및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위축을 우려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대법원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습니다. 노동자 손배소송과 관련해 단일 사건으

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손잡고는 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79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한편, 20대 국회에 발의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민사소송특례법,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은 2019년 국회에서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손배대응모임]

* 국가손배대응모임 참여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생명평화결사,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등 총 29개 단체

2019.01.30 공동기자회견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2019.01.30 쌍용차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

2019.01.31 1.30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결과 및 입장

2019.02.01 법무부의 쌍용자동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능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

2019.02.20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법무부 면담

2019.02.21 2.20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법무부 면담결과 및 입장

2019.03.05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재면담

2019.03.06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경찰청 재면담 결과 알림의 건 보도자료 배포

2019.03.1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한 기본권 행사 제한 관련 간담회'
2019.03.26	쌍용자동차지부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간담회 1차
2019.03.26	쌍용자동차지부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간담회 2차
2019.04.0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하는 기자회견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소송 10년, 멈춰야 합니다"
2019.04.03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차 국가손배배상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
2019.04.07	쌍용자동차지부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간담회 3차
2019.04.11	쌍용자동차지부 국가손배가압류 재판관련 실무회의
2019.04.19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국가손배당사자 간담회
2019.04.24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피해자 면담
2019.06.27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피해자 단체 공동 기자회견 "경찰은 국가폭력 사과하고 권고사항 즉각 이행하라!"
2019.07.24	쌍용차 가압류 미해지자 가압류 해제조치 확인
2019.11.11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방청
2019.11.20	쌍용차 손배 관련 긴급 대책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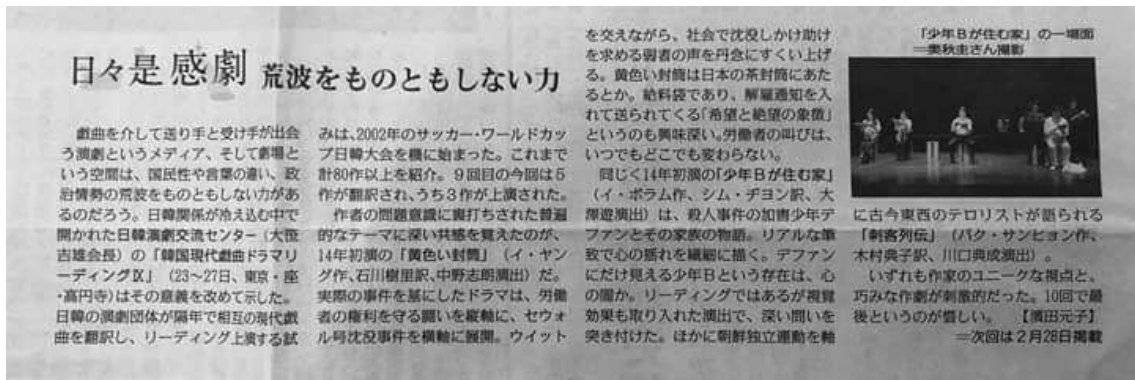
■ 문화기획/캠페인

손잡고연극제 | 연극 '노란봉투', 일본에 가다

연극 노란봉투가 일본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일연극교류센터에서 2년에 한 번씩 한국의 연극을 일본에 소개하고 일본의 연극을 한국에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제9회 한국현대희곡 드라마리딩 및 심포지엄>의 주제를 '사회적 사건을 다룬 연극'으로 하며, 대표적 작품으로 '노란봉투'를 선정해 일본에 소개했습니다. 손잡고에서는 활동가가 참여해 함께 연극을 보고 일본 관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의 연극인들과 관객들은 연극 '노란봉투'의 작품성을 칭찬하면서, '사회적 사건'을 연극으로 옮긴 '손잡고 연극제'의 기획과 '손잡고'라는 단체의 역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보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손잡고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했습니다.

손잡고로서는 노란봉투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한 2014년 초연부터 이번 일본 초청 공연까지 사실상 매년 공연을 하게 된 셈이라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문화콘텐츠가 갖는 설득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연극 <노란봉투> 일본 마이니치 신문 소개 ▲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연극 노란봉투 “작가의 문제의식에 뒷받침된 보편적인 주제에 깊은 공감대를 느낀 것(공연작)은, 2014년 초연된 노란 봉투. (이양구 작, 이시카와 주리 역, 나카노 시로 연출) 실제의 사건을 기본으로 한 드라마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을 세로 축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을 가로 축으로 전개. 위트를 섞으면서, 사회에서 침몰해 가며 도움을 요구하는 약자의 소리를 정성스럽게 건져올린다. 노란 봉투는 일본의 찻봉투에 해당한다던가. 월급봉투이자 해고 통지를 넣어서 보내지는 「희망과 절망의 상징」이라는 것도 흥미롭다. 노동자의 외침은 언제 어디서나 여전하다.”

손잡고인문학강좌 | "우리의 노동이 빛나기 위하여"

2019년 손잡고는 문화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동자·시민 인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지금도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산업현장에서 매일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위험 노동은 비정규직 차지이고, 노조파괴에 맞서 싸움에 나서면 수십억 원의 손해가압류로 옥죄는 이 나라의 노동현실.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열심히 일해도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우리사회의 현실 앞에서 상처 입는 사람들. 고달픈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수 없는지, 노동현실과 우리 사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온 저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손잡고 인문학 강좌 현장

첫 번째 시간, <체공녀 강주룡> 저자 박서련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강주룡의 뜨거운 삶, 잡지 기사 속 1930년의 강주룡이 작가의 상상을 거쳐 책이 되어 우리를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손잡고에서 박서련 작가에게 주문한 “강주룡은 왜 체공녀가 되었을까”라는 주제부터, 작가가 직접 꼽은 “강주룡은 페미니스트일까”라는 주제까지 다양하게 강주룡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의 노동현실을 겹쳐보았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라는 주제였는데요, 마침 강연 날이 전태일 열사의 기일이었습니다. 열사가 온몸을 불살라 알려낸 ‘근로기준법’, 49년이 지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노동권을 알고 권리를 행사하며 살고 있을까를 두고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등 현실의 사례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김혜진 활동가는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노동자가 행복한 것, 최소한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왜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의문에 대한 홍기빈 소장의 냉철한 해설과 함께 ‘경제성장’이 이상이 된 70년을 되짚어보았습니다. 홍기빈 소장은 경제활동을 평가할 때 수익성과 경제성장으로 평가를 했던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으로는 그린뉴딜을 제시했습니다.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원리를 수익과 성장에서 ‘좋은 삶’과 ‘생태위기 극복’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두고 뒤풀이까지 옮겨가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의 저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 직장갑질, 태움, 직장내 괴롭히기 등등. 직장민주주의가 사라지는 현실을 돌아보고, 일터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우리의 일터를 민주적인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같이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첫 강좌여서 생소한 탓인지, 40명을 목표로 강좌를 열었는데, 총 24명의 시민 여러분이 강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학술연구 활동

손배피해기록 | 맞잡은 손의 온기가 현장에 닿도록!

2019년 한 해도 기회가 닿는대로 현장 손배당사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손배가 압류로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증언을 듣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사자가 허락한 경우 기록의 일부는 ‘인터뷰’ 형태로 기고되기도 합니다. 기록이 기고되지 않더라도, 손잡고의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많은 현장에서 손잡고를 찾을 수 있도록 활동을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되새깁니다.

[2019년 손배피해기록-피해당사자면담]

2019.03.07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손배당사자 간담회
2019.03.12	보쉬전장 손배가압류 당사자 면담
2019.04.02	신영프레스전분회 손배협박공문 당사자 간담회



▲ 아사히글라스지회 방문



▲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방문



▲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기자회견 참석



▲ 노동/인권 단체 긴급 기자회견 참여

손배실태조사 |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잡고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김승섭 교수 연구팀과 심리치유센터 와락과 공동주최로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노동자 노동권침해와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승섭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교수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이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연구의 의미’에 대한 기조발언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섭교수 연구팀 연구원인 박주영 박사가 실태조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 송영섭 변호사(손잡고 운영위원, 금속노조법률원),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참여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및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손해배상가압류가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뿐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초자료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파업이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제기되는 손배가압류가 노동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실제로 노동자 당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환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결과발표회는 손잡고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집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회



▲ 언론인터뷰 기사

손잡고는 설문지를 들고 손배가압류피해당사자를 만나는 역할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236명의 손배가압류피해당사자는 금속노조 소속으로 쟁의행위를 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사례자들입니다. 여건 상 현재 가장 많은 손배가압류 사업장이 속해있는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후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밑거름이 되어 심화된 조사와 연구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손배실태조사]	
2019.01.04	최종 설문지 제출 및 연구팀 회의
2019.01.08	손배노동자 포커스그룹인터뷰
2019.01.17	언론인터뷰(한겨레, 법률방송)
2019.01.22	결과발표 관련 금속노조 면담
2019.01.24	값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 지원 활동

지원연계 | 성심수녀회와 손잡고!

2018년도 성심수녀회의 연대를 받아 피해노동자 가구에 학비지원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심수녀회는 2015년 첫 만남 이후 매년 손잡고와 연계해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손잡고는 내부 논의를 거쳐 손배피해 가구 가운데 노란봉투캠페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동현장과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 당사자 가운데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대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성심수녀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은 6가구에 학비지원을, 8가구에 영유아 보육비 지원, 1가구에 긴급생활비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심수녀회 마들렌 소피센터 교육비(보육비) 신청서

1. 성명				
2. 생년월일		성별		
3. 본적				
4. 주소 (보호자)			연락처	
5.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직업	기타사항
자녀 통장	계좌번호	은행:	계좌주:	

본인은 귀 재단의 교육비 지원자가 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이에 신청 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보호자 : _____

재단법인 성심수녀회 소피센터 귀중

토크콘서트 | 2015년 4월 세상을 마주한 두 여자 이야기

손잡고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원종복지관대책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성차별, 직장괴롭힘, 해고, 민형사소송 29건, 손배청구 5천여만원] "여기는 원종복지관입니다" - 2015년 4월 세상을 마주한 두 여자 이야기>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원종복지관에서 해고된 두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것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안고 사는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

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용기를 내어 직장 괴롭힘에 저항한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9년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었지만, 해당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15년 발생한 두 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으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에게 벌어진 일은 분명 직장 괴롭힘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현재도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과 구상금청구가 남아있습니다. 용기내어 저항한 사람들이 무더기소송에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응원과 연대를 보내주세요.



▲ 토크콘서트 현장



▲ 토크콘서트 현장

긴급법률기금지원 | 법률비용 전달

2017년 김호정 회원이 법률비용이 모자라 부당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돕는데 써달라며 지정기탁금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해당 기금을 보내며, 김호정 회원은 아버지 故 김추백 선생님이 '제일동포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오랜 시간 국가폭력을 당한 경험을 했기에, 부당한 법집행이 가져오는 피해와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김추백 선생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김호정 회원이 직접 기록해 출판한 책 [발부리 아래의 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금을 2019년 쟁의행위 과정에서 모욕, 명예훼손을 했으며 민사소송 외에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된 노동자의 법률비용으로 전달했습니다.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을 해주신 김호정 회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KEC지회 압류종결 | 민주노조지킴이 KEC지회를 손잡고 응원합니다!

2019년 9월, KEC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압류가 3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3년의 임금압류를 견디는 동안, 지회 조합원들은 더 단단히 뭉쳤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 임금차별 등 문제를 알리고 인권위로부터 차별시정 권고를 받았고, 단가 1700원의 부실식단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김천 관제센터, 구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등 경북지역 내 투쟁사업장에 적극적인 연대활동도 펼쳤습니다.

이처럼 연대로 3년의 임금압류를 견딘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손잡고가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참여 노동조합들과 함께 <민주노조 지킴이 KEC지회를 손잡고 응원합니다> 행사를 열었습니다. KEC지회는 손배압류가 끝났지만, 손배가압류 제도가 사라지고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손잡고 노동현장들과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지를 밝혔습니다.



▲ KEC노동자 임금압류 종결



▲ KEC지회 지원사업

■ 연대 활동

노동현장연대 | 손배소 노동현장과 손잡고!

2019년에도 손잡고는 손배노동현장의 ‘손’이 되어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를 지원했습니다. 신속함이 요구되는 현장 상황에 대한 기고나, 성명, 탄원, 위원회 참여 등 연대활동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노동현장별 창립기념일, 후원주점, 송년행사 등 기쁜 일에도, 장례, 열사대책위, 추모문화제 등 슬픈 일에도 여건이 닿는 한 함께 했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은 것은, 아직 손잡고가 1인 활

동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연대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2020년에는 회원과 활동가가 늘어 활동역량도 강화되길 바랍니다.



▲ 기자회견 연대



▲ KEC 행사참여



▲ 쌍용차범대위 기자회견



▲ 비정규직 이제그만



▲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 토론회

[손잡고논평]
 2019.01.10 경북대병원분회 업무방해 대법 승소 판결에 대한 손잡고 논평 “경북대병원

	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경북대병원은 손배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2019.01.11	파인텍 노사 항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파인텍지회, 고생많으셨습니다"
2019.01.15	경북대병원 손배철회에 대한 손잡고 논평 "경북대학교병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철회를 환영한다"
2019.04.12	한국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및 노조파괴 규탄 논평 "대한항공청소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소송갑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조파괴와 괴롭힘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2019.05.22	ILO협약 비준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한 손잡고 논평 "정부는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하고, 국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2019.05.22	KEC 노조파괴 불법인정, 역손배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손잡고 논평 "노조파괴는 '불법', KEC 노동자들의 저항은 당연하다! KEC 노조파괴에 따른 노동자 임금압류, 중단해야 한다!"
2019.07.25	발레오만도 노조파괴는 유죄,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했다. 정부는 노동적폐로 적시한 '노조무력화시도'에 대한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9.11.13	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직접 고용 방안 마련에 힘써라
2019.11.15	"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를 괴롭히는 손배소의 공범이다. 회사와 국가는 괴롭힘 소송을 즉각 멈춰라."

[기자회견]

2019.01.02	쌍용차해고노동자 10년 만에 복직합니다
2019.03.12	노동3권 유린한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조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유시영 실형(법정구속) 촉구 기자회견
2019.04.12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원청개입 노조파괴행위 고발 기자회견
2019.06.20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9.07.15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 횡령 재판 법정 최고형 처벌하라. 9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끝내라"
2019.08.20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탄 기자회견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청구까지!"
2019.08.23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불법파견 1심 승소 "아사히글라스는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2019.08.27	기아차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 단식 30일 기자회견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2019.09.04	노조파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 횡령 재판 결과에 대한 유성지회입장
2019.09.09	"구조고도화 빙자한 폐업의 굶판 걷어라!"

2019.12.30 쌍용차 해고자 복직-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쌍용차 마힌드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약속을 지켜라!”

[공동기자회견]

2019.01.04 국가인권위의 늦장대응으로 유성기업 노동자가 죽었다! 국가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2019.01.07 75미터 굴뚝 위 홍기탁, 박준호 무기한 단식 선포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2019.01.08 천안법원 검찰 규탄 유성지회 기자회견 “천안 검찰의 느장수사와 천안지원의 재판연기가 또 노동자를 죽였다!”

2019.01.10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공동기자회견

2019.01.11 파인텍지회 박준호, 홍기탁 굴뚝농성 해제

2019.03.11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2019.06.20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06.22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2019.07.04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2019.07.04 노조설립과정 중 해고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를 요하는 인권위 기자회견

2019.07.24 현대중공업 손배가압류 대책위 기자회견 “적반하장격 '손배가압류' 앞세워 보복조치에 나선 현대중공업, 일본 '아베'와 무엇이 다른가?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2019.09.04 불법파견 정규직 직접 고용 명령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일 셈인가? 지금 당장 불법파견 정규직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세요!”

[노동현장실무지원]

2019.01.05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2019.01.14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2019.01.15 택배노조 손배대책회의

2019.01.16 유성지회 언론대응회의

2019.03.21 창조컨설팅 2심 선고 참관

2019.04.24 “유성기업 조재상 양희열 석방 탄원서”(~5/9)

2019.05.02 원종복지관 항소심 법률대응회의

2019.05.03 원종복지관 국가인권위 진정준비

2019.05.03	쌍용차 손배대책회의
2019.05.08	쌍용차 손배대책회의
2019.05.17	쌍용차 손배대책회의
2019.06.17	원종복지관 탄원서 제출
2019.06.19	유성기업기사검열 언론대응회의
2019.06.21	쌍용차 회사손배 2심 참관
2019.06.24	국가폭력 규탄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 기자회견 “정리하고 수갑은 풀렸는데, 국가폭력 수갑은 그대로”
2019.06.28	유성기업기사검열 관련 언론노조 정책실 간담회
2019.06.29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2019.07.09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2019.07.09	유성지회 언론대응회의
2019.08.06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2019.08.23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1심 선고 참관
2019.08.23	KEC지회 구조고도화 농성장 방문 및 대책회의
2019.08.29	창조컨설팅 대법원 판결 참관
2019.08.29	유성지회 언론대응회의
2019.09.04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재판 1심 참관
2019.11.15	쌍용차 회사손배 2심 선고 참관
2019.11.26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2019.12.05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2019.12.16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가치분가입류 대응회의
2019.12.26	쌍용차 사회적합의 파기 대책회의

[연대활동]

2019.01.04	<유성범대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유성기업 정신건강실태조사 늦장대응에 대한 사과 촉구와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요청 항의 서한 전달
2019.01.05	<비정규직이제그만!> 비정규직 100인대표단 참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2019.01.09	[추모]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16주기
2019.01.12	전주 택시지부 김재주 고공농성 500일 문화제
2019.01.18	파인텍지회 병문안
2019.03.04	콜텍 끝장투쟁지지 신문광고 연명
2019.03.04	<비정규직이제그만!> 노동개약규탄기자회견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약, 노동기본권파괴법 만든다고? 경사노위 해체하라!”
2019.03.07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방문 및 투쟁기금전달

2019.04.11	파인텍지회 투쟁승리 보고대회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9.04.27	KEC지회 단합대회 참석 및 투쟁기금 전달
2019.04.29	유성지회 박문열 조합원 장례식 조문
2019.05.06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농성장 방문
2019.05.08	<ILO공동행동> 집행위원회 회의(2차)
2019.05.10	하이디스지회 배재형 열사 4주기 추모제
2019.05.11	<비정규직이제그만!> 511 비정규직 대행진
2019.05.17	유성기업 노조파괴 규탄대회 참가
2019.05.18	5.18 노동자대회 참가
2019.05.22	<ILO공동행동>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9.05.24	“희망버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나라. 다시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2019.06.14	<ILO공동행동> ILO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즉각 비준-선비준이 해법이다”
2019.06.27	[추모] 쌍용차지부 김주중 조합원 1주기
2019.08.22	<조문> MBC본부 이용마 조합원 장례식
2019.08.23	김천통합관제센터 정규직 전환 합의 보고대회
2019.09.09	KEC 노조파괴 끝내기를 위한 ‘노조파괴장례식’ “노조파괴는 죽었다”
2019.10.02	<비정규직이제그만> “법원판결대로 하라는 요구가 단식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며 연행할 일인가!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자들에 대한 폭력연행 규탄한다”
2019.10.08	불법파견 도로공사 이강래사장 시민고발단 함께하기 “도로 위의 불법파견을 처벌합시다!”
2019.11.22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후원주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하여!” 참석 및 연대기금 전달
2019.12.16	<조문>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故人현철 님 장례식
2019.12.21	KEC지회 김영이 조합원 정년퇴임식 참석 및 KEC지회와 아사히지회 공동주관 “마술같은 송년의 밤” 참석
2019.12.21	[추모]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기일
2019.12.31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 연대기금 전달

[공동성명]

2019.01.14	뒤늦은 인권위 결정, 유성기업은 당장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2019.01.21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비정규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
2019.01.29	故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2019.04.29 “유성기업은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금속노조 유성지회 박문열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 2019.08.14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형 규탄한다!-법원은 현대차의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맞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 2019.08.14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문제 해결”
- 2019.08.22 <유성범대위>법을 우롱한 낮은 형량, 사법부의 친재벌 성향 아직도 그대로인가
- 2019.12.31 “ASA는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 관계 기관은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ASA전주공장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건 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2019.12.31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토론회]

- 2019.07.10 “유성기업 노조파괴, 왜 9년까지 이어지나?”
- 2019.10.04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

시민사회연대 | 시민사회와 손잡고!



▲ 시민사회연대회의 후원의 밤



▲ [버선발 이야기] 출판기념회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현안 뿐 아니라, 손잡고에 연대 요청의 손길을 요청하는 다양한 사안들에도 가능한 연대의 손을 꼭 맞잡고자 노력했습니다. 손잡고 역시 많은 시민단체들에 손배가압류 문제해결과 손잡고 노동현장 사안 해결을 위해 함

께 노력하자는 요청을 자주 보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 손잡고 시민사회 연대]	
2019.03.19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후원주점 기금전달
2019.04.23	백기완 선생님 <버선발 이야기> 출판기념 한마당
2019.04.24	[연대활동] <공동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개서한
2019.04.29	서울시와 국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2019.05.14	[연대활동] <공동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2019.08.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9교류와 연대의 밤’ 참석
2019.10.09	[연대활동]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창립발기인대회 참석 및 연대기금 전달
2019.11.21	[연대활동] 인권재단사람후원의밤 참석 및 연대기금 전달
2019.12.10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야만의 아픔 위에 새긴 세계 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기고활동

손잡고는 노동현장의 상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성원들이 언론기고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각 기사는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손잡고 기고활동]	
[기고활동]	
2019.03.18	항소심 판결 앞둔 ‘노조파괴’ 창조컨설팅(한겨레-송영섭 운영위원)
2019.06.05	(박래군의 인권이야기)광주와 용산에 대한 응답(뉴스토마토-박래군 운영위원)
2019.06.25	부당한 해고이기에 41년째 투쟁 중(시사인-윤지선 활동가)
2019.07.23	“왕뚜껑이 나온 날, 뚜껑이 열렸다”(시사인-윤지선 활동가)
2019.09.25	“둘째 임신하자 직장은 지옥이 되었다” (시사인-윤지선 활동가)
2019.11.17	일본 기업 대표는 슬며시 웃지 않았을까(시사인-윤지선 활동가)
2019.12.10	[박래군칼럼]대한민국은 인권 포기 공화국인가(경향신문-박래군 운영위원)

2019.12.19	쌍용자동차 손배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시사인-윤지선 활동가)
[언론활동]	
2019.01.30	"국가폭력 피해자라더니.. 손배가압류로 월급 반토막"(CBS정관용시사자키)
2019.02.08	노동3권 제약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시사인)
2019.02.26.	《워커스》편집위원회 대나무숲(참세상)
2019.03.11	"너무 흔해 당연해 보이는 파업 손배가압류, OECD 중 한국 유일... 굉장히 특이한 경우"(법률방송)
2019.03.14	"파업의 본질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법률방송)
2019.09.20	"조국 정국에 지워진 노동자들" (한겨레 라이브인)
2019.09.25	EBS다큐 <시선> 손배가압류 취재

■ 회원활동

제4회 회원총회 | "손잡고의 하루를 잡아주는 손!"

손잡고는 2019년 4월 25일,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2018년 한 해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4회 회원총회는 사업결산보고, 사업계획승인 외에도 운영위원 추가 인선, 감사 인선이 있었습니다. 유금분 서울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상담실장을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선임했고, 업무감사로는 김도형 변호사를, 회계감사로는 박병학 회계사를 선임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정관개정을 실시했습니다(개정된 정관은 자료집 별첨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슬로건을 “손잡고의 하루를 잡아주는 손!”으로 정하고, 회원배가를 통해 내실을 단단히 하기로 의지를 다졌습니다.



▲ 제4회 손잡고 총회 현장

뉴스레터 | 정기 뉴스레터 “손깍지”



손잡고의 정기 뉴스레터 “손깍지”는 회원 여러분과 손잡고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손잡고 회원이 아닌 시민여러분에게 손잡고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자 만든 온라인 소식지입니다.

2019년에는 총 7회의 “손깍지”를 발행했습니다. 손잡고 활동과 재정 및 납부확인, 손배가압류 관련 언론소식, 노동현장 소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손깍지는 회원이 직접 알려주신 이메일 외에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을 하고 있으며,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소식지- 손깍지 7회, 손잡고편지 1회]

2019.01.14	<뉴스레터> 손깍지 2호 발행
2019.02.25	<뉴스레터> 손깍지 3호 발행
2019.03.26	<뉴스레터> 손깍지 4호 발행
2019.04.30	<뉴스레터> 손깍지 제5호 발행
2019.08.14	<뉴스레터> 손깍지 6호 발행
2019.09.11	<손잡고편지> 정겨운 한가위 보내세요!
2019.10.08	<뉴스레터> 손깍지 7호 발행
2019.12.31	<뉴스레터> 손깍지 제8호 발행

6. 활동 평가

1) 2019년 사업계획 수행 결과

① 입법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괴롭힘소송금지법’(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두 법안에 대해 2019년 국회에서 법안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이어갈 계획”

- 수행 결과

• 노란봉투법 : 2019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회부 이후, 제354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2017.9.14.)에 상정되었지만, 2020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 차례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괴롭힘소송금지 특례법 : 손잡고가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손배대응모임에서는 참여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은 ‘제367회 국회 제2차 전체회의’(2019.3.14.)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소위원회 논의 등은 없었습니다.

• 기타 소취하 관련 : 손잡고가 간사단체로 참여한 국가손배대응모임의 활동으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가압류(퇴직금, 부동산 분) 당사자 39명 가운데 38명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조치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1인은 연락이 닿지 않은 희망퇴직자로, 이후 노조에서 가압류이의제기신청을 통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법제도개선활동 관련

- 쌍용차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손잡고가 참여한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쌍용차 국가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의견서 제출의 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받아들이는 결정문을 회신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을 알렸습니다. 진정서의 핵심은 ‘노동3권이 위축될

우려'를 표하고 '헌법이 보장되는 판결'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 쌍용차, 유성기업, 원종복지관 등 손배가압류 관련 탄원서 조직
- 한일손배가압류노동자 교류 : 일본 쟁의연락회의의 초청으로 5월 일본을 방문회 국회간담회, 일본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손잡고와 한국GM, 쌍용자동차지부에서 참여했습니다. 8월에는 일본 쟁의연락회의와 아사히다이아몬드공업, 각켄 등 일본의 손배가압류 노동현장에서 한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② 모금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안정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회원배가활동을 전개할 계획”,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손잡고의 회원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체홍보도 함께할 것”, “사업비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 등 사회적 재원을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도 계속”

수행 결과

• 회원배가운동 : 2019년은 전년도대비 회원수가 8명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기부금영수증 신청이 통과되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게 된 점 등 후원회원을 늘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KB손해보험노동조합 기금체결 및 손잡고 참여 노동조합 연대기금 : 2019년도 손잡고의 활동에 공감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연대기금을 기부받았습니다. KB손해보험노동조합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공생을 위한 후원’으로 ‘손잡고’를 선정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19년 가압류 해제조치 된 쌍용차지부에서도 정기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 사업비 공모 : 2019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제3회 손잡고 연극제’ 등 문화/캠페인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공모를 신청했으나,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인권재단사람에서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활동가재충전프로젝트: 일단 쉬고’에 선정되어 활동가 휴가비를 지원했습니다.

③ 지원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2019년도 손배피해노동현장에 연대활동을 계속해 나

갈 것”, “성심수녀회와 같이 손잡고를 통해 피해가구에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협업”

- 수행 결과

• 노동현장실무지원 : 2019년도는 ‘손잡고 노동현장’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실무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쌍용차 국가손배대응과 사회적합의파기 대응 지원, 유성기업 반론보도권 남용 언론모니터링 활동, 손배가압류 관련 언론기획, KEC 구조고도화 사업 및 폐업시도 저지 활동, 원종복지관 손배 피해노동자 실무지원, 아사히비정규직 손배대응 등 노동현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가가 노동현장을 방문해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리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를 노조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 성심수녀원 연계 : 2019년도 성심수녀원에서 장학금과 보육비 지원 연계사업을 제안해주었습니다. 장학생 6명, 보육지원 8가구, 생활비지원 1가구를 지원 연계했습니다.

• 긴급법률기금지원 : 손배가압류 노동자 가운데, 단위노조 또는 산별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지역노조 개별가입 노동자는 노조를 통한 법률지원이 취약합니다. 이러한 개별가입 노동자 가운데 민형사상 긴급법률기금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법률기금을 긴급지원했습니다.

④ 의제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노동현장간담회, 법제도개선위원회 등 활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추진할 계획”, “운영위원과 활동가가 적극 나서 기고와 홍보활동을 통해 손잡고와 손배소 현장 상황을 직접 알려내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

- 수행 결과

• 노동현장간담회와 공동활동 : 2019년에도 손배소 노동현장의 참여로 5차례 노동현장간담회를 수행했습니다. 노동현장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거나, 노동현장이 처한 주요 의제를 시민사회로 확대해 시민사회 공동주최 기자회견으로 확

장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나갔습니다.

- ILO100주년 관련 공동행동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ILO공동행동’에 참여해 손배가압류 문제의 의제화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ILO에 KEC 노동자의 손배 임금압류상황을 알리는 문서를 금속노조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 언론활동 : 2019년에는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8건의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각 현장과 매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EBS, KBS 등과 손배현장 관련 기획을 시도했으나, 보류되었습니다. 올해는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⑤ 감시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손배피해실태조사 발표”, “손배현황집계 발표도 수행할 것”

- 수행 결과 :

- 손배피해실태조사 발표 : 손잡고는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김승섭 교수팀과 심리치유센터 와락과 함께 금속노조 소속 손배가압류 당사자 236명을 대상으로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월 24일 손배가압류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첫 번째 피해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실태조사 결과는 추후 소송, 언론중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등 법제도개선활동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수차례 언론을 통해 인용되며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 손배현황집계발표 : 2019년에도 손배현황집계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섭 등 현장상황 고려, 식물국회 등 법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에 대한 각 행정기관의 이행 경과 확인 등을 두고 고심 끝에 2020년 총선 이후로 발표를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⑥ 캠페인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제3회 손잡고 연극제”,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여름 손잡고와 함께 맥주파티”, “가을, 손잡고 인문학 강좌”, “겨울 손잡고 노동현장과 함께 한 해 보내기”

- 수행 결과 :

• 손잡고연극제 : 제3회 손잡고 연극제는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충하고자 했으나,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1월 25일~27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연극문화교류’에 한국 작품으로 연극 <노란봉투>가 선정되어, 일본에서 낭독극의 형태로 연극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잡고는 제작자로 참여해 관객과의 대화로 일본의 관객들을 만나 한국의 손배가압류 현실에 대해 알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손잡고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했습니다.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손잡고와 공동주관을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공동주최로 참여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5회 대회의 주제는 ‘법인분할과 파업에 대한 손배’입니다. 총 12팀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해, 8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 여름, 손잡고와 함께 맥주파티 : 회원배가를 위한 손배알리기 프로젝트로 계획했던 ‘맥주파티’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재원과 인력확충, 노동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기획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을, 손잡고 인문학 강좌 : 2019년 11월 한 달동안 매주 수요일, 가을 손잡고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박서련 소설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 소장, 우석훈 경제학 박사가 함께했습니다. 총 22명의 여러분이 강연을 듣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 겨울, 손잡고 노동현장과 함께 한 해 보내기 : 손배 노동현장과 회원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몇몇 노동현장의 농성(고공, 단식)상황, 노조

선거 등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2월 진행한 노동현장간담회를 손잡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2019년을 평가하고 2020년 손배가압류 관련 법제도개선 등 노동현장과 함께하는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⑦ 회원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총회”, “정기 뉴스레터 <손깍지>”

- 수행 결과 :

• 제4회 총회 : 정관 개정을 해 2020년부터 3월 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총회에 통과된 결산보고서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기부금민간단체 지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회계감사 2인의 선임과, 운영위원 1인의 추가선임을 했습니다. 차기 총회부터는 3월 내에 총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뉴스레터 <손깍지> : 2019년에는 정기뉴스레터 손깍지를 7회 발행했습니다. ‘손깍지’는 손잡고편지 외에 노동현장소식, 사업소식, 후원 및 재정보고 등으로 구성합니다. 매월 발행하지 못한 점을 2020년에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총평

2019년 손잡고는 본연의 목표인 법제도개선활동과 더불어, 피해노동현장에 대한 지원활동 등을 주활동으로 전개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국가손배나 기업이 제기한 손배 등 개별손배사건들이 종결될 수 있도록 단일사건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및 책임자를 면담하고, 요청에 따라 개별사업장 간담회 등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 공모 참여 등으로 직접 모금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비하고자 했으나, 안타깝게도 참여한 공모사업이 전부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부분을 노동조합의 연대기금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제안 등으로 재정부담을 나누어 계획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계획사업은 아니지만 한일교류사업이 세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1월 연극 <노란 봉투>의 초청으로 한일연극교류에 참여해 문화/캠페인 사업을 진행했으며, 5월과 8월에는 한일손배가압류노동현장 교류로 법제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일노동현

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력이 닿는 한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해 제안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주요 활동목표에 따라 실행된 분야별 활동은 사업별 기획 취지와 기대효과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첫 시도로 준비한 캠페인 활동과 의제활동 등 일부 활동에서 기획단계에서 단체의 역량을 반영해 기획하거나 구상하지 못한 점 등 개선할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도 사무국 구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1인 활동가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운영위원이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지원하고, 2020년에는 각 활동위원회를 복원해 활동지원 및 사업수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7. 2019년 활동일지

- 2019.01.02 [연대활동] <기자회견> 쌍용차해고노동자 10년 만에 복직합니다
- 2019.01.04 [연대활동] <유성범대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유성기업 정신건강실태조사 늦장대응에 대한 사과 촉구와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요청 항의 서한 전달
- 2019.01.04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국가인권위의 늦장대응으로 유성기업 노동자가 죽었다! 국가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 2019.01.04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최종 설문지 제출 및 연구팀 회의
- 2019.01.05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 2019.01.05 [연대활동] <비정규직이제그만!> 비정규직 100인대표단 참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 2019.01.07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75미터 굴뚝 위 흥기탁, 박준호 무기한 단식 선포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 2019.01.08 [연대활동] <기자회견> 천안법원 검찰 규탄 유성지회 기자회견 “천안 검찰의 늑장수사와 천안지원의 재판연기가 또 노동자를 죽였다!”
- 2019.01.08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손배노동자 포커스그룹인터뷰
- 2019.01.09 [추모]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16주기
- 2019.01.10 [손잡고논평] 경북대병원분회 업무방해 대법 승소 판결에 대한 손잡고 논평 “경북대병원 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경북대병원은 손배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 2019.01.10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공동기자회견
- 2019.01.11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파인텍지회 박준호, 흥기탁 굴뚝농성 해제
- 2019.01.11 [손잡고논평] 파인텍 노사 항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파인텍지회, 고생많으셨습니다”
- 2019.01.12 [연대활동] <현장연대> 전주 택시지부 김재주 고공농성 500일 문화제
- 2019.01.14 [연대활동] <공동성명> 뒤늦은 인권위 결정, 유성기업은 당장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 2019.01.14 [회원활동] <뉴스레터> 손깎지 2호 발행
- 2019.01.14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 2019.01.15 [손잡고논평] 경북대병원 손배철회에 대한 손잡고 논평 “경북대학교병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철회를 환영한다”
- 2019.01.15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택배노조 손배대책회의

- 2019.01.16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지회 언론대응회의
- 2019.01.17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언론인터뷰(한겨레, 법률방송)
- 2019.01.18 [연대활동] 파인텍지회 병문안
- 2019.01.18 [운영회의] 제29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1.21 [연대활동] <공동성명> 반노동 반인권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비정규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라!
- 2019.01.22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결과발표 관련 금속노조 면담
- 2019.01.24 [학술연구] <손배실태조사>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첫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 2019.01.25 [문화/캠페인] <연극노란봉투> 한일연극문화교류회 '노란봉투' 낭독회 참여
- 2019.01.26 [문화/캠페인] <연극노란봉투> 한일연극문화교류회 '노란봉투' 낭독공연 관객과의 대화 참여
- 2019.01.29 [연대활동] <공동성명> 故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2019.01.30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공동기자회견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 2019.01.30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
- 2019.01.30 [언론활동]“국가폭력 피해자라더니.. 손배가압류로 월급 반토막”(CBS정관용시사자키)
- 2019.01.31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1.30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결과 및 입장
- 2019.02.01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법무부의 쌍용자동차노동자 일부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능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
- 2019.02.08 [언론활동] 노동3권 제약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시사인)
- 2019.02.20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법무부 면담
- 2019.02.21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2.20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법무부 면담결과 및 입장
- 2019.02.25 [회원활동] <뉴스레터> 손잡지 3호 발행
- 2019.02.26 손잡고 창립 5주년
- 2019.02.26. [운영회의] 제30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2.26. [언론활동] 《워커스》편집위원회 대나무숲(참세상)

- 2019.03.04 [연대활동] 콜텍 끝장투쟁지지 신문광고 연명
- 2019.03.04 [연대활동] <비정규직이제그만!> 노동개악규탄기자회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 노동기본권 파괴법 만든다고? 경사노위 해체하라!”
- 2019.03.05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재면담
- 2019.03.06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경찰청 재면담 결과 알림의 건 보도자료 배포
- 2019.03.07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손배당사자 간담회
- 2019.03.07 [연대활동]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투쟁기금전달
- 2019.03.11 [언론활동] “너무 흔해 당연해 보이는 파업 손배가압류, OECD 중 한국 유일... 굉장히 특이한 경우”(법률방송)
- 2019.03.11 [연대활동] <기자회견>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 2019.03.12 [연대활동] <기자회견> 노동3권 유린한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조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시영 실형(법정구속) 촉구 기자회견
- 2019.03.12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보쉬전장 손배가압류 당사자 면담
- 2019.03.14 [언론활동] "파업의 본질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법률방송)
- 2019.03.14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제38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 2019.03.15 [운영회의] 손잡고 모꼬지 (3/15~16)
- 2019.03.18 [기고활동] 항소심 판결 앞둔 ‘노조파괴’ 창조컨설팅(한겨레-송영섭 운영위원)
- 2019.03.18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한 기본권 행사 제한 관련 간담회’
- 2019.03.19 [연대활동]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후원주점 기금전달
- 2019.03.21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창조컨설팅 2심 선고 참관
- 2019.03.21 [운영회의] 제31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3.26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자동차지부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간담회 1차
- 2019.03.26 [회원활동] <뉴스레터> 손깍지 4호 발행
- 2019.03.26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자동차지부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간담회 2차

- 2019.04.02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신영프레스전분회 손배협박공문 당사자 간담회
- 2019.04.03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하는 기자회견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소송 10년, 멈춰야 합니다”
- 2019.04.03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차 국가손해배상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
- 2019.04.05 [기타활동] <일단쉬고> 인권재단사람 활동가 지원사업 일단쉬고 선정, 기금전달식 참석
- 2019.04.07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자동차지부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간담회 3차
- 2019.04.11 [연대활동] 파인텍지회 투쟁승리 보고대회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19.04.11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자동차지부 국가손배가압류 재판관련 실무회의
- 2019.04.12 [손잡고논평] 한국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및 노조파괴 규탄 논평 “대한항공청소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소송갑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조파괴와 괴롭힘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 2019.04.12 [연대활동] <기자회견>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원청개입 노조파괴 행위 고발 기자회견
- 2019.04.15 [회계감사] 2019년 정산보고 및 회계감사(~4.24)
- 2019.04.17 [사업감사] 2019년 업무보고 및 사업감사(~4.22)
- 2019.04.18 [운영회의] 제32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4.19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국가손배당사자 간담회
- 2019.04.23 [연대활동] 백기완 선생님 <버선발 이야기> 출판기념 한마당
- 2019.04.24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피해자 면담
- 2019.04.24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기업노동자 탄원서 연대요청 “유성기업 조재상 양희열 석방 탄원서”(~5/9)
- 2019.04.24 [연대활동] <공동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개서한
- 2019.04.25 [회원활동] 제4회 손잡고 회원총회 “손잡고의 하루를 잡아주는 손!”
- 2019.04.27 [연대활동] KEC지회 단합대회 참석 및 투쟁기금 전달
- 2019.04.29 [연대활동] <공동성명> “유성기업은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금

- 속노조 유성지회 박문열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 2019.04.29 [연대활동] <조문> 유성지회 박문열 조합원 장례식 조문
- 2019.04.29 [연대활동] <공동성명> 서울시와 국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 2019.04.30 [회원활동] 손잡고 총회 결과 보고
- 2019.04.30 [회원활동] <뉴스레터> 손깍지 제5호 발행
- 2019.05.02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원종복지관 향소심 법률대응회의
- 2019.05.03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원종복지관 국가인권위 진정준비
- 2019.05.03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손배대책회의
- 2019.05.06 [법제도개선활동] <한일손배교류> 참가자 사전모임
- 2019.05.06 [연대활동]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농성장 방문
- 2019.05.07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공고
- 2019.05.08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집행 및 실무회의
- 2019.05.08 [연대활동] <ILO공동행동> 집행위원회 회의(2차)
- 2019.05.08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손배대책회의
- 2019.05.10 [연대활동] <추모제> 하이디스지회 배재형 열사 4주기 추모제
- 2019.05.10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 2019.05.11 [연대활동] <비정규직이제그만!> 511 비정규직 대행진
- 2019.05.14 [연대활동] <공동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2019.05.15 [법제도개선사업] <한일손배현장교류> 일본 손배노동현장 연대 방문
- 2019.05.15 [법제도개선사업] <한일손배현장교류>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가처분, 간
접강제 등 노동탄압사례발표 한일손배현장간담회
- 2019.05.16 [법제도개선사업] <한일손배현장교류> 일본 손배노동현장 연대 방문
- 2019.05.17 [연대활동] 유성기업 노조파괴 규탄대회 참가
- 2019.05.17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손배대책회의
- 2019.05.18 [연대활동] 5.18 노동자대회 참가
- 2019.05.21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접수
- 2019.05.21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
출제위원회 출제회의
- 2019.05.22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제39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 2019.05.22 [손잡고논평] ILO협약 비준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한 손잡고 논평
“정부는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하고, 국회는 기본권 보장을 위

- 한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 2019.05.22 [연대활동] <ILO공동행동>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2019.05.22 [손잡고논평] KEC 노조파괴 불법인정, 역손배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손잡고 논평 “노조파괴는 '불법', KEC 노동자들의 저항은 당연하다! KEC 노조파괴에 따른 노동자 임금압류, 중단해야 한다!”
- 2019.05.24 [연대활동] <모금지원> “희망버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나라. 다시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 2019.06.05 [기고활동] (박래군의 인권이야기)광주와 용산에 대한 응답(뉴스토마토-박래군 운영위원)
- 2019.06.10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규정 및 문제출제
- 2019.06.14 [연대활동] <ILO공동행동> ILO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즉각 비준-선비준이 해법이다”
- 2019.06.17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인권위원회-손잡고 정책간담회
- 2019.06.17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원종복지관 탄원서 제출
- 2019.06.19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기업기사검열 언론대응회의
- 2019.06.20 [연대활동] <기자회견>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가 압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손배가압류 노조탄압중단 촉구 대한항공 원하청노동자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
- 2019.06.20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2019.06.21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회사손배 2심 참관
- 2019.06.22 [연대활동] <공동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 2019.06.24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국가폭력 규탄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 기자회견 “정리하고 수갑은 풀렸는데, 국가폭력 수갑은 그대로”
- 2019.06.25 [기고활동] 부당한 해고이기에 41년째 투쟁 중(시사인)
- 2019.06.27 [추모] 쌍용차지부 김주중 조합원 1주기
- 2019.06.27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피해자 단체 공동 기자회견 “경찰은 국가폭력 사과 하고 권고사항 즉각 이행하라!”
- 2019.06.28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기업기사검열 관련 언론노조 정책실 간담회

- 2019.06.28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제40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 2019.06.29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 2019.07.04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2019.07.04 [연대활동] <공동기자회견> 노조설립과정 중 해고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를 요하는 인권위 기자회견
- 2019.07.04 [운영회의] 제33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7.08 [지원활동] <두여자이야기> 원종복지관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 2019.07.09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 2019.07.10 [연대활동] <토론회> “유성기업 노조파괴, 왜 9년까지 이어지나?”
- 2019.07.15 [연대활동] <기자회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 횡령 재판 법정 최고형 처벌하라. 9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끝내라”
- 2019.07.15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 심사 종합평가
- 2019.07.09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지회 언론대응회의
- 2019.07.17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예선 결과 발표
- 2019.07.19 [지원활동] <두여자이야기> 원종복지관 법률기금마련 대책회의
- 2019.07.23 [기고활동] “왕뚜껑이 나온 날, 뚜껑이 열렸다”(시사인)
- 2019.07.24 [연대활동] 현대중공업 손배가압류 대책위 기자회견 “적반하장격 '손배가압류' 앞세워 보복조치에 나선 현대중공업, 일본 '아베'와 무엇이 다른가? 92억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 2019.07.24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가압류 미해지자 가압류 해제조치 확인
- 2019.07.25 [손잡고논평] 발레오만도 노조파괴는 유죄,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했다. 정부는 노동적폐로 적시한 ‘노조무력화시도’에 대한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2019.07.31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제41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 2019.07.31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재판부 구성 확정(집행위원회)
- 2019.08.06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 2019.08.12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보도자료 배포 “일방적인 법인분할에 대항하는 파업, 노동자의 권리행사로

- 인정받을 수 있을까”
- 2019.08.14 [연대활동] <공동성명>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형 규탄한다!-법원은 현대차의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맞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 2019.08.14 [연대활동] <공동성명>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문제 해결”
- 2019.08.14 [회원활동] <뉴스레터> 손깎지 6호 발행
- 2019.08.17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대회
- 2019.08.20 [법제도개선활동] <모의법정>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결과 보도자료 배포 “손배소, 변호인은 노동자들 겪었을 고통을 더 자신감 있게 변론해야”
- 2019.08.20 [연대활동] <기자회견>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탄 기자회견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청구까지!”
- 2019.08.22 [연대활동] <조문> MBC본부 이용마 조합원 장례식
- 2019.08.22 [운영회의] 제35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08.22 [연대활동] <공동성명> 법을 우롱한 낮은 형량, 사법부의 친재벌 성향 아직도 그대로인가-유성범대위
- 2019.08.23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1심 선고 참관
- 2019.08.23 [연대활동] <기자회견>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불법파견 1심 승소 “아사히글라스는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 2019.08.23 [연대활동] 김천통합관제센터 정규직 전환 합의 보고대회
- 2019.08.23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KEC지회 구조고도화 농성장 방문 및 대책회의
- 2019.08.26 [법제도개선활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면담
- 2019.08.27 [연대활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9교류와 연대의 밤’ 참석
- 2019.08.27 [연대활동] <기자회견> 기아차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 단식 30일 기자회견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 2019.08.29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창조건설팅 대법원 판결 참관
- 2019.08.29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지회 언론대응회의
- 2019.08.29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제42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 2019.08.29 [법제도개선활동] <한일손배노동현장교류> 한일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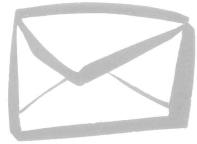
- 2019.09.04 [연대활동] <기자회견> 불법파견 정규직 직접 고용 명령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일 셈인가? 지금 당장 불법파견 정규직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세요!”
- 2019.09.04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재판 1심 참관
- 2019.09.04 [연대활동] <기자회견> “노조파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 횡령 재판 결과에 대한 유성지회 입장”
- 2019.09.09 [연대활동] <기자회견> “구조고도화 빙자한 폐업의 굶판 걷어라!”
- 2019.09.09 [연대활동] KEC 노조파괴 끝내기를 위한 ‘노조파괴장례식’ “노조파괴는 죽었다”
- 2019.09.11 [회원활동] <손잡고편지> 정겨운 한가위 보내세요!
- 2019.09.17 [법제도개선활동] KEC구조고도화 관련 손잡고-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실(산자위소속) 면담
- 2019.09.20 [언론활동] "조국 정국에 지워진 노동자들" (한겨레 라이브인)
- 2019.09.25 [기고활동] “둘째 임신하자 직장은 지옥이 되었다” (시사인)
- 2019.09.25 [언론활동] EBS다큐 <시선> 손배가압류 취재
- 2019.09.27 [노동현장연대] KEC지회 성명 <구미시, 터미널 선진화 연구용역 결과 뒤집고 KEC 복합환승터미널 건립 추진했다>
- 2019.09.28 [지원활동] <KEC손배압류종결> 3년 손배 압류를 이겨낸 KEC 지회 응원 동영상 제작
- 2019.09.29 [지원활동] <KEC손배압류종결> “민주노조 지킴이, KEC지회를 손잡고가 응원합니다” 행사 주관
- 2019.09.30 [운영회의] 제36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10.02 [연대활동] <비정규직이제그만> 규탄성명 “법원판결대로 하라는 요구가 단식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며 연행할 일인가!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자들에 대한 폭력연행 규탄한다”
- 2019.10.04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국회토론회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윤지영 운영위원 발제)
- 2019.10.04 [지원활동] <토크콘서트> 성차별, 직장괴롭힘, 해고, 민형사소송 29건, 손배청구 5천여만원 "여기는 원종복지관입니다"
- 2019.10.08 [회원활동] <뉴스레터> 손깎지 7호 발행
- 2019.10.08 [연대활동] 불법파견 도로공사 이강래사장 시민고발단 함께하기 "도로 위의 불법파견을 처벌합시다!"
- 2019.10.08 [문화/캠페인] <손잡고강좌> “우리의 노동이 빛나기 위하여” 강좌개설

알림 배포

- 2019.10.09 [연대활동]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창립발기인대회 참석 및 연대기금 전달
- 2019.10.10 [기타활동] <일단취고> 활동가재충전프로그램(~10/31)
- 2019.11.06 [문화/캠페인] <손잡고강좌> 우리의 노동이 빛나기 위하여 1강 “강주룡은 왜 체공녀가 되었을까?” (박서련 소설가)
- 2019.11.11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방청
- 2019.11.13 [문화/캠페인] <손잡고강좌> 우리의 노동이 빛나기 위하여 2강 “모두가 알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 (김혜진 상임활동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19.11.13 [손잡고논평]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손배청구 규탄 논평 <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직접 고용 방안 마련에 힘써라>
- 2019.11.14 [모금활동] KB손해보험지부 사회공헌사업기금 전달식,
- 2019.11.15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회사손배 2심 선고 참관
- 2019.11.15 [손잡고논평] 쌍용자동차 회사손배 2심 선고에 대한 손잡고 논평 “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를 괴롭히는 손배소의 공범이다. 회사와 국가는 괴롭힘 소송을 즉각 멈춰라.”
- 2019.11.17 [기고활동] 일본 기업 대표는 슬며시 웃지 않았을까(시사인)
- 2019.11.20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손배 관련 긴급 대책회의
- 2019.11.20 [문화/캠페인] <손잡고강좌> 우리의 노동이 빛나기 위하여 3강 “경제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이유”(강사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2019.11.21 [연대활동] 인권재단사람후원의밤 참석 및 연대기금 전달
- 2019.11.22 [연대활동]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후원주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하여!” 참석 및 연대기금 전달
- 2019.11.26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 2019.11.27 [문화/캠페인] <손잡고강좌> 우리의 노동이 빛나기 위하여 4강 “민주주의가 꽃피는 일터를 위해” (우석훈 박사)
- 2019.12.02 [지원활동] <긴급법률기금지원> 원종복지관 노동탄압 피해노동자 법률기금 긴급지원(형사벌금)
- 2019.12.05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원종복지관 피해노동자 면담
- 2019.12.05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손배 관련 긴급 대책회의
- 2019.12.09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국가손배 관련 정의당 당

대표 면담

- 2019.12.09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국가손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의견서 결정문 정본 수신
- 2019.12.10 [연대활동] <공동성명>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야만의 아픔 위에 새긴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2019.12.10 [기고활동] “[박래군 칼럼] 대한민국은 인권 포기 공화국인가” (경향신문-박래군 운영위원 기고글)
- 2019.12.16 [연대활동] <조문>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故人현철 님 장례식
- 2019.12.16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가처분가압류 대응회의
- 2019.12.19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 “국가폭력 피해 10년, 쌍용차 노동자 괴롭힘 이제 멈추자”
- 2019.12.19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 2019.12.19 [기고활동] 쌍용자동차 손배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시사인)
- 2019.12.21 [연대활동] KEC지회 김영이 조합원 정년퇴임식 참석 및 KEC지회와 아사히지회 공동주관 “마술같은 송년의 밤” 참석
- 2019.12.21 [추모]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기일
- 2019.12.26 [연대활동] <쌍용차범대위> 쌍용차 사회적합의 파기 대책회의
- 2019.12.26 [지원활동] <긴급법률기금모금> 소셜펀치 오픈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복소송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세요”(~2/28)
- 2019.12.27 [법제도개선활동] <탄원서>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 2019.12.27 [운영회의] 제37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9.12.29 [법제도개선활동] <국가손배대응모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서 서면답변 확인
- 2019.12.30 [연대활동]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자 복직-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쌍용차 마힌드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약속을 지켜라!”
- 2019.12.31 [연대활동] <공동성명> “ASA는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 관계 기관은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ASA전주공장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건 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2019.12.31 [연대활동]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 연대기금 전달
- 2019.12.31 [연대활동] <공동성명>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 2019.12.31 [회원활동] <뉴스레터> 손깍지 제8호 발행
- 2019.12.31 <기부금모집단체 선정>



2019년 손잡고 재정정보고

1. 2019 운영성과표

운 영 성 과 표

제 6(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손잡고

(원)

과 목	제 6 (당)기	
	금 액	
I. 사업수익		50,465,012
C M S 회 비		35,920,012
후 원		12,880,000
개 인 후 원	2,680,000	
단 체 후 원	10,200,000	
기 타 사 업 수 익		1,665,000
공 모 사 업	1,000,000	
손 잡 고 강 좌	165,000	
사 업 분 담 금	500,000	
II. 사업비지출		30,088,370
법 제 도 개 선 사 업		10,209,312
국 가 손 배 대 응 모 임	107,000	
법 제 도 개 선 활 동	29,670	
노 동 현 장 간 담 회	459,140	
모 의 법 정	9,439,060	
한 일 손 배 현 장 교 류	174,442	
문 화 기 획		2,285,154
손 잡 고 연 극 제	760,004	
손 잡 고 강 좌	1,525,150	
학 술 연 구		1,041,440
손 배 피 해 기 록	173,950	
손 배 실 태 조 사	867,490	
연 대 사 업		3,838,100

	연 대 활 동 비	2,579,500	
	노 동 현 장 실 무 지 원	1,258,600	
	기 타 사 업 비		2,680,324
	운 영 회 의	580,140	
	홍 보 비	1,095,584	
	발 송 비	4,600	
	일 단 쉬 고	1,000,000	
	회 원 사 업		547,480
	총 회	537,480	
	뉴 스 레 터	10,000	
	지 원 사 업		9,486,560
	두 여 자 이 야 기	1,348,800	
	KEC 임 금 압 류 종 결 축 하 행 사	3,137,760	
	긴 급 범 룰 기 금 지 원	5,000,000	
III. 사 업 이 익			20,376,642
IV. 운 영 비 지 출			43,164,670
	고 정 인 건 비	25,942,600	
	단 기 인 건 비	2,244,500	
	보 험 공 과 료	4,034,400	
	복 리 후 생 비	1,097,200	
	통 신 비	57,370	
	소 모 품 비	145,150	
	지 급 수 수 료	1,697,550	
	기 타 운 영 비	5,545,900	
	판 공 비	2,400,000	
V. 운 영 손 실			22,788,028
VI. 운 영 외 수 익			56,064
	이 자 수 익	56,064	
VII. 당 기 순 손 실			22,731,964

※ 과목 항목 정리

(1) 사업비 부문

1) 기타사업비 : 고정된 법제도개선활동, 문화기획, 지원활동, 연대활동 외 지출된 사업 관련 항목이 포함됩니다.

- ① 운영회의 : 사업계획 및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의를 위한 진행비
- ② 홍보비 : 사업홍보를 위한 메일링 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지출된 금액
- ③ 발송비 : 기타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출된 우편발송비

(2) 운영비 부문

1) 기타운영비 관련 : 기타운영비로 묶인 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① 업무추진비 : 행사비 외에 업무진행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야근식사비, 단체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된 금액
- ② 사무실관리비 : 손잡고가 사무실을 위탁하고 있는 인권재단사람에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금액
- ③ 회계관리비 : 2018년부터 분기별 정산보고를 비롯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과 계약. 매월 지급한 금액.

2) 판공비 : 상임대표 활동비 지급

3) 복리후생비 : 점심식사비

2. 2019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5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손잡고

(단위 : 원)

과 목	제 6(당)기		제 5(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48,757,647		71,342,011
(1) 당 좌 자 산		48,757,647		71,342,011
보 통 예 금		48,757,647		71,337,611
미 수 금		0		4,400
(2) 재 고 자 산		0		0
II. 비 유 동 자 산		0		0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0		0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0
자 산 총 계		48,753,760		71,342,011
부 채				
I. 유 동 부 채		2,064,200		1,916,600
예 수 금	39,780		18,660	
미 지 급 비 용	2,024,420		1,897,940	
II.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2,064,200		1,916,600
자 본				
I. 자 본 금		0		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V. 이 익 잉 여 금		46,693,447		69,425,411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46,693,447		69,425,411
(당 기 순 손 실)		(22,731,964)		(7,740,096)
자 본 총 계		46,693,447		69,425,41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8,757,647		71,342,011

*부채 : 유동부채 항목의 예수금과 미지급항목은 고정급여분(12월 급여를 1월 급여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분과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부채항목에 표기됨)



총회 안건 및 승인

안건1. 2019년 회계 및 업무감사 보고 승인

1) 회계감사 보고

2019년도 감사보고

손잡고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과 관리가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손잡고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박병학



2) 업무감사 보고

「손잡고 2020년 정기총회」 업무감사 보고서

본 감사는 손잡고 2019년도 사업 활동에 대한 업무감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감사 방법

업무감사의 실시는 업무보고서 등 업무 관련 서류의 확인, 사무국에 대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 감사 평가

2019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 피해구제 및 권익옹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활동, 지원 활동, 문화/캠페인 활동, 연대 활동, 언론 활동 등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크게 지적할 만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관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야 하는데, 필요 시에는 임시 운영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므로 정기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으로 정관 규정을 바꾸어서 운영위원들의 회의 참석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회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회원 참여를 확대할 수 사업을 좀 더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활동위원회와 사무국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6.

감사 김도형



2. 2020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주문) 2020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주십시오.

1) 2020년 주요 활동 목표

- 입법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활동
- 모금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운동
- 지원활동 : 손배가압류 피해자 및 노동현장 지원활동
- 의제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의제화(기고,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 감시활동 : 손배가압류 현황조사 및 사례 기록
- 캠페인활동 :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공연, 전시, 1인시위 등)
- 회원활동 :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회원배가운동
-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국 구성 확대

2) 2020년 주요 활동 목표에 따른 사업계획안

2020년 손잡고 활동계획

항목구분	사업계획	시기	비고
모금활동	CMS-회원배가활동	수시	
	공모사업 지원	수시	
	기타 긴급모금	필요 시	법률기금 등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월1회	정기사업
	법제도자문위원회 활동	4월부터	자문위 구성 후 활동계획보고
	제6회노란봉투법 모의법정경연대회	2020.4~9	5월 공고, 8월 시상식
	국가손배대응모임	수시	
	대정부 관련 활동(가안)	2020.5~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연대 활동
감시활동 (학술연구)	손배현황발표	하반기	
	소송기록 수집 및 분석	2020.4~11	인권재단사람공모사업선정

	손배피해사례기록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 활동	2020.4~	자문위 구성 후 활동계획보고
지원활동	피해자 지원	필요 시	모금활동 결과에 따라 변동
	지원 연계	요청 시	연계요청시 논의 후 결정
연대활동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연대	수시	
	기타 연대사업(성명, 기자회견 등)	수시	손배노동현장에 집중
캠페인활동	문화기획위원회 구성	2020.4~	기획위 구성 후 활동계획보고
	기타 홍보 콘텐츠 등	필요 시	
의제활동	손배가압류 관련 기고	수시	
	기타	수시	기획기사 등
회원활동	총회	2020.2	정기사업
	손잡고 뉴스레터 <손각지>	분기별	정기사업
	손잡고 영상상영회	하반기	

① 모금활동

- 주요 목표 : 안정적 재원 확보
- 이행 방안 : 운영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100인 회원배가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사업비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 등 사회적 재원을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도 계속합니다.

② 법제도개선활동

- 주요목표 : 차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 활동계획을 세울 것임. 노동현장간담회, 모의법정, 국가손배대응모임 등 기존 진행해온 법제도개선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임.
- 이행 방안 : 법률가 가운데 운영위원 총원 및 활동위원회 강화, 법제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및 법제도개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모의법정은 재원마련을 위해 공동주최와 사업비 확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보고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법제도자문위원회 : 현재 손배가압류 관련해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두 개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괴롭힘소송금지법’(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입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은 발의만 되었지 20대 국회에서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라면 두 법안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 21대 총선 이후 법안과 입법 활동을 점검하고 21대 국회에서 두 법안이 입법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두 개의 법안이 모두 개정,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자문위원회를 입법 관련 전문가들로 재구성하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③ 지원활동

- 주요 목표 :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시 논의.
- 이행 방안 : 성심수녀회와 같이 손잡고를 통해 피해가구에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적극 발굴하고, 협업을 제안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시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긴급모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의제활동

- 주요 목표 : 총선대응 및 21대 국회구성 이후 손배가압류 문제를 의제화함
- 이행 방안 : 손배가압류를 알리는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낼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입법을 위해서 입법공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할 것 등을 단계적 계획을 세워 대응합니다.

⑤ 감시활동

- 주요 목표 : 손배가압류 현황 발표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
- 이행 방안 : 학술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손배가압류 현황 발표, 소송기록 수집 및 분석 자료집 발간, 개별당사자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구술작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계획들을 이행하기 위한 자원 확보 방안으로 관련 공모사업 참여 및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⑥ 캠페인활동

- 주요 목표 : 문화예술분야 운영위원 확충 및 활동위원회 구성
- 이행 방안 : 문화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복잡하고 어려운 손배가압류 문제를 시민의 눈높이로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강화합니다. 문화기획에는 재원확보방안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현실성 있게 캠페인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⑦ 회원활동

- 회원총회 : 회원총회는 정관이 규정한 3월 이내 개최를 목표로 합니다.
- 뉴스레터 <손깍지> : 정기 뉴스레터 <손깍지>를 분기별(매월 발행에서 변경)로 발행하여 손잡고 활동 내용을 회원과 충실하게 공유하겠습니다.
- 손잡고 영상상영회 : 2020년은 회원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노동을 주제로 한 ‘손잡고 영상상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회원사업 외에도 손잡고에서 2020년 추진한 공개사업(토론회, 발표회 등)에 회원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직하겠습니다.

3. 2020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1) 전년도 이월자산 : 48,753,760원

2) 2020년 예산(안)

수입예산				지출예산			
항목	세부항목	금액	내역	항목	세부항목	2020년(안)	2019년
이월		48,753,760			인건비(단기포함)	30,000,000	
후원	회비	43,200,000	* 회원 360명기준	운영비	인건비 외 운영비	15,000,000	43,164,670
					소계	45,000,000	
	후원	15,000,000	전년기준	사업비	법제도개선	20,000,000	30,088,370
	기타	2,000,000	전년기준 기타수익 등 추정		모금활동	5,000,000	
소계	60,200,000		의제활동		5,000,000		
사업기금	사업수익	20,000,000	공모 등		감시활동	30,000,000	
	소계	20,000,000		연대활동	5,000,000	30,088,370	
				회원활동	2,000,000		
				캠페인활동	6,000,000		
				지원활동	5,000,000		
				회의비	2,000,000		
				기타활동비	3,000,000		
				소계	83,000,000		
				예비비		953,760	
수입총계		128,953,760		지출총계		128,953,760	

4. 임원 및 감사 승인의 건

1) 임원

① 대표 : 배춘환 상임대표의 연임을 승인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 배춘환 : 손잡고 상임대표

② 운영위원 : 기존 운영위원진(아래)의 연임을 승인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부설 인권중심사람 소장

- 박병우: 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실장

- 송영섭: 변호사, 前 금속법률원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유금분: 서울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상담실장

-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③ 신임 운영위원 : 신임 운영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추인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장, 활동위원회 가운데 법제도자문위원회 담당할 예정입니다.

* 추천사(송영섭 운영위원): 민주노총 법률원장으로 언론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는 등 여러 손배·가압류 대응활동을 해왔으며,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등 민주노총 내 노동현안에 대한 법률대응,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률정책활동, 노동법개정 제도개선요구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를 손잡고 법제도개선 분야의 운영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이양구: 문화예술인, 활동위원회 가운데 문화기획위원회 담당할 예정입니다.

* 추천사(박래군 운영위원): 이양구 작가는 연극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으로, 손잡고의 문화기획사업의 하나인 ‘손잡고 연극제’를 함께하며 연극 <노란봉투>, <C가 왔다>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풀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손배가압류 주제를 대중의 시선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손잡고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를 담당할 운영위원으로 이양

구 작가를 추천합니다.

2) 업무감사

① 업무감사 김도형 변호사 임기 종결 보고

손잡고 업무감사를 맡은 김도형 변호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업무감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감사를 맡아 수고해주신 김도형 변호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② 신임 업무감사 : 신임 업무감사로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추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안건

[첨부자료1. 손잡고 정관]

손잡고 정관

개정 2016. 4. 25.

개정 2019. 4. 2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라 한다.

제2조 [목적]

손잡고는 노동쟁의 등을 원인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손배 가압류’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 피해구제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시민모금과 사회 여론형성 등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유로운 개인과 단체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①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손배 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2. 손배 가압류 관련 모금
3. 손배 가압류 관련 피해자 지원 사업
4. 손배 가압류 관련 사회 의제화 사업
5.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제고
6. 기타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과 위 ①항의 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제5조 [소재]

손잡고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 ① 손잡고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안자(발기인)로 참여하거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는 회원이 된다.
- ② 회원 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손잡고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손잡고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손잡고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후원금 또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탈퇴]

- 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손잡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제1절 총회

제10조 [지위]

총회는 손잡고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제11조 [구성]

총회는 대표와 운영위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총회는 출석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참석 회원들의 의결로써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손잡고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대표와 감사,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 3.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 4. 손잡고의 해산
 - 5. 기타
-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의 2 [임원의 해임] 대표, 감사,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손잡고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손잡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손잡고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관이다.

제15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와 5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되며,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 ④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운영위원장의 결위 또는 사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운영위원회 내에 활동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임기]

- ①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절 활동위원회

제20조 [지위]

- ① 손잡고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 ② 각 활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위원회는 손잡고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④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활동보고와 계획을 제출한다.

제21조 [구성]

- ①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활동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소통위원회, 법제도개선위원회 등 손잡고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임기]

활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대표, 감사, 사무국 등

제23조 [대표]

- ① 대표는 손잡고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 이상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 ③ 공동대표는 각자 손잡고를 대표한다. 대표가 결위 또는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대표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설>

제23조의 2 [감사]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 3 [사무국]

- ① 손잡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종사자를 포함한 구성원과 조직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4조 [자문위원]

손잡고는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와 단체를 자문위원으로 두어 손잡고의 활동에 대한 협력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25조 [지역조직 등]

- ① 손잡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조직 또는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 ② 지역조직 또는 회원모임의 조직과 구성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부설기관]

손잡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7조 [회계 연도]

손잡고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과 결산]

- 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② 대표는 손잡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9조 [수입]

손잡고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해산

제30조 [해산 사유]

손잡고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1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2조 [잔여 재산의 귀속]

손잡고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손잡고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6장 보칙

제33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6. 4. 25. 개정]

1. 이 정관 중 개정조항은 2016. 4. 25. 총회에서의 의결이 있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9. 4. 25. 개정]

1. 이 정관 중 개정조항은 2019. 4. 25. 총회에서의 의결이 있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자료2. 20대국회 발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57
----------	------

발의연월일 : 2017. 1. 18.

발 의 자 : 강병원·남인순·김영주

유승희·문미옥·여기구
신창현·박찬대·김병관
이원욱·서영교·윤후덕
김현권·소병훈·전해철
이철희·권미혁·박남춘
박광운·이용득·박홍근
송옥주·박 정·임종성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고 있어,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계약자유 원칙으로 대변되는 「민법」의 원리 대신에 실질적인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자유를 수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

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음.

한편,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의 취지상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음.

따라서 파업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양 측면의 비교형량과 더불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헌법」상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제1항)은 개별근로자 및 그 단결체가 이를 향유하나, 개별근로자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집단 그 자체의 통일적인 행동으로서 집단적인 행위임. 이는 쟁의행위가 통상 노동조합의 결의와 지시를 기초로 통일적 행동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실태에도 부합함.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일상적인 업무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시켜 쟁의노동관계라고 해야 할 특수한 관계를 노사 사이에 만들어 내며, 쟁의행위 국면에서는 일상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의무와 직장규율의 전제되는 기반 그 자체가 결여되게 되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특수한 성격은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는 물론 어떠한 이유로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로서 존재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자마자 쟁의노동관계를 모두 일상적인 노동관계의 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태도임.

노동조합의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총의로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단결승인의무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총의를 존중해야 하며,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누가 그것을 지도하고 누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는가를 추궁하여 단체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단결자치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할 것임. 조합임원과 일반조합원의 각 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의 단순한 일개 구성부분으로서만 평가되어야 마땅함.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

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은 피고용인이 고용 후 고용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3자가 약속하는 것임. 신원보증은 근로(고용)계약에 부수되는 일종의 보증계약이라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쟁의노동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에 돌입한 상태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신원보증인 제도의 취지와 배치됨.

더욱이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신원보증인에게 노동조합의 집단적 행동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제3자인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따라서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라.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적 기구이자, 사실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주체이며, 다른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헌법 실현적이고 기본권 보장적인 기구인 노동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물적 토대가 필수적임.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청구됨으로 인하여 여러 노동조합의 재정이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심할 경우 노동조합 그 자체가 와해되거나 붕괴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이런 상황과 위협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존립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한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조합원 인원 수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에도 사업계속의 불가능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

업수당을 기준 이하로 함으로써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경감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관계의 계속성과 상호관련성에서 비롯된 것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적 노사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민법」 제765조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사업의 규모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본래 경영자가 부담하고 있던 것이므로 불법과업임을 이유로 이

를 전부 노동조합 측에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음.
또한 정의행위 원인과 경위,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상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정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개별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정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損害賠償 請求의”를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法에 의한 團體交渉 또는 爭議行爲로”를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 2.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 4.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 5.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단서 신설></p>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p>제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① -----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p> <p style="margin-top: 10px;">----- .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margin-top: 10px;">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margin-top: 10px;">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p>

<신 설>

<신 설>

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의무

4.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5.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첨부자료3. 20대국회 발의 '괴롭힘소송금지법']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57
----------	-------

발의연월일 : 2018. 10. 4.

발 의 자 : 박주민.김해영.추미애

정동영.서영교.박찬대

박 정.노웅래.윤소하

서형수.이정미.윤준호

안호영.강병원.맹성규

최재성.김철민.서삼석

송기현.표창원.이 훈

채이배 의원(22인)

제안이유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정부, 단체 및 개인)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광우병대책회의(2008년), 민중총궐기, 유성기업 등에서 국가에 의한 청구액만 62억 5,969만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이에 이러한 소송을 제한할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로 2017년 4월에 민사소송법학회에서 제출한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소송의 제한을 위한 법률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음.

다만, 국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소송 유형은 국가가 공적 이슈에 대하여 진행된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청구를 제기하는 유형임. 따라서 이런 소송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면 소송의 조기종결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위 유형의 소송이 제한 대상 소송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압류청구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제한이 필요하며, 형식적인 승소가능성 외에 소송의 ‘괴롭힘’ 목적이 확인될 경우에 조기종결을 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실질적 방안을 종합하여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함.

이에 제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수정·보완함.

주요내용

가.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우리 현실에 맞게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한 별도의 심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다.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본안청구 외에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절차의 특칙을 두어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6조).
- 마.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두어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조).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고 이를 통하여 공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괴롭힘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롭힘소송”이란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한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여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실제적인 목적이 있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2.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절차에서 행하여진 진술 또는 제출된 서면

나.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절차에서 심리, 심의, 검토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진술 또는 서면

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라.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진술, 서면 또는 집회에서 의 진술, 행위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괴롭힘소송에 대한 각하신청 및 재판) ① 법원은 제기된 소송이 괴롭힘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다

만, 괴롭힘소송을 제기한 자가 승소가능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보복 또는 괴롭히기로 인정되거나 소제기로 인한 기본권 행사의 현저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의 각하 여부에 관한 재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을 진행한 후 신속하게 결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까지 증거조사를 포함한 본안의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즉시항고) 제3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또는 각하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반소) ①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반소가 제기되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본소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6조(가압류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기재된 당사자 및 피보전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및 기관의 장이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가 행한 제2조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3.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따른 괴롭힘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 전까지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판은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에 관한 특칙) 법원은 제3조, 제5조, 또는 제6조의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피고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 MEMO -

손잡고  마음 따뜻하다!
노란봉투

손잡고 자료집

손잡고 제5차 회원총회 자료집

발행일 2020. 03. 18.

발행처 손잡고(대표 : 배춘환)

담 당 윤지선 활동가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Copyright ©손잡고, 2020

대표전화 02-725-4777

홈페이지 www.sonjabgo.org
